

사업주 위탁훈련 부정한 영업행위 주의 안내

□ 2019년 1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 훈련비 자부담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자부담 없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식의 제보가 있어서,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금지되는 불법 영업행위(예시)

- 훈련기관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환급 받은 후 사업주에게 돌려줌(사실상 자부담 없이 위탁훈련 진행)

□ 관련 근거

- 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할 수 있으며(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),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(동법 제62조의3)
- 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”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**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이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**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**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**를 말함(대법원 판결, 2012두24764)

□ 부정한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

- 공단은 부정한 영업행위 근절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해 고용센터,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의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
- 부정한 영업행위로 확인되면 해당 훈련기관은 물론 사업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
한국산업인력공단
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